의안 번호 1261

# 원용의 중국공사설내장에 등의 최초환 환경 보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연월일 : 2016. 9. 2.(금) 나. 제 출 자 : 이효상 외 10명 다. 위원회회부 : 2016. 9. 13.(화) 라. 위원회심사 : 2016. 9. 21.(수)

#### 2.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제고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까지)
- 다. 보호자 관람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활용홍보 및 민간운영시설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까지)

#### 4. 근거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복지법

#### 5. 검토의견

- 중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향상을 도모 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제고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 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 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 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 다.

-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다.